

의안번호	2214486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6.1.12.
추계번호	25D6367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2억 5,000만원(연평균 2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평균
공유재산 전문기관 업무수행 경비 지원	250	250	250	250	250	1,250	250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(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·진단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	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44조의2(공유재산 총조사)	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3 (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·진단 등)	×	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은 대부분 분석·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조사방법에 따라 예산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,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2	안 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	○	
3	안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	×	일반재산 감면사유 발생 빈도 및 감면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44조의2(공유재산 총조사)	×	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대부분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조사방법에 따라 예산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,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8조의4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수행 비용은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라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전문기관에 지원한 예산액을 준용함
-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행정안전부는 「지방회계법」 1)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(한국지방공제회)에 연간 2억 5,0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바 있음

[표 2]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원 예산 세부내역

(단위: 개, 백만원)

구분	내역	예산
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원	연구보고서 발간 등	60
	전문가 자문료 등	30
	교육운영	53
	세미나 개최 등	76
	DB구축	20
	기타	11
	계	250

자료: 행정안전부 결산 사업설명자료

- 추계 기간 동안, 동일한 예산을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공유재산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,000만원 등 향후 5년간 12억 5,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공유재산 전문기관 업무수행 경비 지원	250	250	250	250	250	1,250

자료: 행정안전부 결산 사업설명자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1) 「지방회계법」 제13조(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